

제 안 설명서

【영주시 물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00. 10.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기 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완화 (안 제17조 제3항)

- 종전 불용품 소요조회시 "동일 도(시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동일 도(시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완화함.

나.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기준 완화 (안 제18조 제4항)

- 종전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대상기준을 완화함.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조례준칙안 (2000.8.11 도세정 13330-11646) 사본 1부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동일 도(시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 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 드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p> <p>2. 동일 도(시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 용이 가능한 물품</p>	<p>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 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 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증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p>	<p>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단가 2천만원 이상인 ⑤~⑧ <현행과 같음></p>

(제49회 - 총무 제2차)

"**제49회 총무 제2차**"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2335 /FAX (053)950-2339
세정회계과 과장 박진순 사무관 김홍록 담당자 유영태

문서번호 세정 13330-11646

시행일자 2000.08.11 (5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음 수신처 참조

참조 회계, 재무과장, 물품관리
담당과장

선장	38000	지	
일자		시	
접수	2000.8.12	결재	감사
번호	38000	승인	38000
처리 과	회계과	기	
담당자	김정석	장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율조사 결과 개선대책 시달

- 행정자치부 공기13330-560호 (2000.8.8)의 관련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도 정기재율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부미동재 물품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조례개정, 재물조정과 불용처분등 시행에 절저를 기하기 바라며.
 - 재율조사 특성상 초과품이 반드시 발생함에도 물품장부상 재고와 현품이 일치한 것으로 보고한 구미시, 영천시, 영덕군, 울릉군은 재율조사 재실시(8.20~9.10)후 그 결과 (물품관리지침 207쪽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자치단체 재율현황 - 디스크 포함)를 2000.9.14까지 도에 제출하여 주시고, 당해시군 감사과장은 재율조사 재실시후 당초 조사한 내역과 같이 등 지적사항이 있을시 관계 공무원을 경고처분하고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 물품관리업무 (차량관리 포함)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장관표창(시·도당 5명정도)코자하니 대상자 (구미, 영천, 영덕, 울릉 제외)를 불임 서식에 의거 2000.8.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 불 임 : 1.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율조사 결과 개선대책 1부 (별송)
2. 표창추천 대상자 및 물품업무 추진서식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수신처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처장, 시장·군수 (구미, 영천시, 영덕, 울릉군은
감사과장 포함)

【별표 1】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
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
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

제17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생략) <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동일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p> <p>2. 동일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③(생략)</p> <p>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현행과 같음) <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u></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③(현행과 같음) <u>④-----</u> <u>-----</u> <u>-----</u> <u>-----</u> <u>-----</u> <u>-----</u> <u>단가 2천만원이상인-----</u> <u>-----</u> <u>-----</u> <u>-----</u> <u>-----</u> <u>-----</u> <u>--.</u></p>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40호
- 의 안 명 :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2. 제안이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완화(안 제17조 제3항)

- 종전 불용품 소요조회시 “동일 도(시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동일 도(시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불용품 소요조회기준을 완화함.

나. 불용품 매각시 감정 대상기준 완화(안 제18조 제4항)

- 종전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대상기준을 완화함.

4. 검토의견

- 영주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7조 제3항 개정(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완화)
 - 종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기준은 정부 각부처, 특별시, 타도에는 단위당 장부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 동일 도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장부가격 기준 2천만원 이상으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완화하고
 - 안 제18조 제4항 개정(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기준 완화)
 - 종전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감정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10.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